

천장크레인 보수작업 중 주행하는 크레인 거더에 협착

크레인 보수업체 소속 재해자가 천장크레인 감속기 오일교체작업을 동료작업자와 함께하기 위해 감속기 오일통을 크레인 주행 통로로 운반한 후 동료작업자가 크레인감속기 점검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건물기둥(H-beam) 앞에 서 있다가 주행하던 크레인 거더로 올라가는 계단 부분과 H-beam 사이(11cm)에 협착되어 사망



TIP 안전작업

1 건설물 또는 설비와 크레인 사이 통로 확보

- 크레인 설치 시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60c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며, 그 통로중 건설물의 기둥에 접촉 위험이 있는 경우 40cm 이상 적정 통로를 확보

2 크레인 정비 · 보수작업 시 운전정지

- 크레인 주행레일 상에서 이동 또는 점검 등 작업 시 크레인 운전자에게 알리고 크레인 운전을 정지 후 보수작업 실시



크레인 주행 측면의 안전통로

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9조 (크레인의 수리 등의 작업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4조 (건설물 등과의 사이 통로)



천장크레인 보수작업 중 주행하는 크레인 거더에 협착

크레인 정비 · 보수작업 시에는 크레인 운전을 정지하세요!

